

국제 무역 규제 준수를 위한 CJ사의 약속

CJ 글로벌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정책

CJ ENM은 본 정책을 준수합니다.

CJ ENM 대표이사 윤 상 현



Table of Contents

I. 제정 취지 및 목적	1
1. 서문 (Introduction).....	1
2. 경제제재란?	2
(1) 의미.....	2
(2) 경제제재의 특징과 위험	2
3. 본 정책의 활용	4
(1) 본 정책의 적용 대상 - 전세계적 적용 (Scope & World Wide Applicability).....	4
(2) 본 정책의 활용 시점.....	4
(3) 다른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4
II. 글로벌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정책	5
1. 기본 원칙(Our Standard)	5
(1) 경제제재 준수	5
(2) 거래 전 정책 준수 여부 점검 및 이행, 의심 시 거래중단	5
(3) 전문가의 조력	5
2. 사전 스크리닝 (Sanctions Screening).....	6
(1)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지?	7
(2) “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7
(3) 거래상대방의 거래업체가 경제제재 대상에 해당 하는지?	9
3. 우리의 행동 (Responding to Screening Results)	10
(1) 금지거래 : 즉시 거래 중단	11
(2) 고위험거래 : 즉시 거래 중단 및 제약조건 확인/점검	12
(3)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조치 사항	12
4. 우회시도 금지 (No Bypass).....	13
5. 신고 및 보복 금지 (Reporting and Anti-Retaliation)	13
6. 본 정책 위반의 결과 (Consequences of Violation).....	14

I. 제정 취지 및 목적

1. 서문 (Introduction)

우리는 “국제 무역 규제 준수” 를 우리의 행동강령, <CJ인의 약속>으로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각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시행하는 수출입 통제, 무역 제한, 통상 금지 등의 법적·경제적 제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반드시 준수합니다.

※ <CJ인의 약속> 中 “국제 무역 규제 준수”의 상세 내용

우리는 각 국가가 행하는 수출입 통제, 무역 제한, 통상 금지 등의 법적·경제적 제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모든 규제를 준수합니다. 국제 무역 규제 준수와 관련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략물자의 반출 제한이나 자국민이 아닌 사람에 대한 주요 기밀의 논의 및 전송 금지
- 수출입 통관 서류의 정확한 작성(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품목 분류, 적정 신고 가격 기재 등)
- 특정 국가와의 무역이나 특정 국가 내 사업이 금지되는 무역 금지 및 경제 제재 준수
- 수출을 위해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사전 확인 및 허가 절차 진행
-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거나 부적절한 정부 보조 수단을 통한 수출 장려 금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CJ 구성원 개개인 각자가 민·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고, 국내와 해외를 망라한 그룹의 모든 사업에 회복할 수 없는 근본적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제 무역 및 경제제재 위반의 경우 거래/무역 중지, 자산 동결, 국제 거래 블랙리스트 등재, 교정프로그램 가동 강제, 평판 훼손, 고객/투자자 이탈 등 회사가 입게 될 수 있는 불이익과 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제 무역 및 경제제재의 준수는 중요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이에 우리는 『CJ 글로벌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정책』 (“본 정책”)으로 국제 무역 규제 준수 중 경제제재에 관한 실천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CJ 구성원 모두는 본 정책과 그 내용을 반드시 그리고 철저히 숙지하고, 이행하며, 책임 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경제제재란?

(1) 의미

경제제재(Sanctions)란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 제조 등 전쟁위협,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 테러/범죄 조직 지원, 마약 생산·밀매 등을 방지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미국, 대한민국, EU 회원국과 같은 개별국가, EU와 같은 초국가연합, UN과 같은 국제기구 등이 국제규범이나 자국규범을 위반한 특정 국가/지역/정부/법인/조직/개인 등과의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상업적 또는 금융적 제한조치를 말합니다.

※제재의 대표적 형태

- 수출입 금지, 특정 물품이나 용역 제공 금지
- 합작회사 운영, 투자와 같은 사업 행위 금지
- 제재 대상 국가, 기업, 개인과의 자금 이체 및 송금 금지
- 자산 및 계좌 동결
- 여행 및 운송 금지 등

(2) 경제제재의 특징과 위험

- 우리의 거래가 경제제재를 제정 및 시행하는 국가나 국제기구와는 무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들도 경제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제재는 단순하거나 일관되지 않으며 국가별로, 단체별로 대단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대상 국가나 법인, 품목 등 적용 대상과 기준 등 그 내용이 수시로 변경되고 바뀝니다.
- 경제제재의 종류, 내용 또는 우리 거래가 적용 대상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했다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경제제재 적용 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 경제제재 위반은 위반한 법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반한 법인 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든 계열회사에까지도 그 위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경제제재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는 단지 해당 거래 금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와 무관한 외환 및 금융 거래, 기타 상품 거래 등 전방위로 확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래에 적용되는 경제제재에 대하여 항상 먼저 고민하고,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참고. 주요 경제제재

[UN 제재]

국제기구인 UN은 안전보장이사회(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를 통해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이나 침략 행위의 대상을 결정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거나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UN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정 대상과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한이 있습니다.

UN은 UN제재 결의를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 기업을 조사하고, 거래금지리스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에 등재하는 한편, 회원국으로 하여금 UN제재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제재]

대한민국은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남북교류협력법, 관세법 등의 입법과 정책집행을 통해 UN제재 조치를 이행하고 제재 대상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제재는 적용범위나 제재 수준이 가장 광범위하고,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에까지도 폭넓게 역외 적용하는 특징이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란이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의 투자, 경영, 거래 및 지원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데, ❶ 미국인(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모든 법인 및 그 법인의 해외 자회사, 외국 회사의 미국 자회사/지사,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1차 경제제재(primary sanction)와 ❷ 제재대상과 거래한 제3국 개인, 단체,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도 자국민으로 하여금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제약을 부과하는 2차 경제제재(secondary sanction)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간의 거래라도 1) 미국인의 관여, 2) 미국 원산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3) 미국 달러화 사용 등 미국과 관련성(nexus)이 있는 경우에는 1차 경제제재가 적용됨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U의 경제제재]

EU의 경제제재는 기본적으로 UN제재를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EU는 미국과 같은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무기 거래를 포함하여 특정 산업군의 투자나 거래, 수출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본 정책의 활용

(1) 본 정책의 적용 대상 - 전세계적 적용 (Scope & World Wide Applicability)

본 정책은 씨제이 주식회사와 자회사 등 국내/외 모든 계열사(이하 “CJ”)에서 일하고 있는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근무 장소, 역할, 지위는 물론, 풀타임,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CJ의 모든 사원, 중간관리자, 임원 및 이사진, 위원/고문(이하 “CJ 구성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컨설턴트, 에이전트, 중개자, 대표 등 명칭을 불문하고 CJ를 대리하거나 CJ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제3자에게도 적용되고,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지침 준수가 요구됩니다.

(2) 본 정책의 활용 시점

본 정책은 반드시 거래 준비 단계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하는 거래가 본 정책에서 제시하는 모든 기준에 부합하여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때에만 거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경제제재 관련 법규는 일반적으로 그 구조나 내용이 복잡하여 확인 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단 한 건의 거래에도 다수의 제재가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거래 금지 대상이나 품목도 수시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본 정책 및 각국의 경제제재와 관련한 조금이라도 의문이나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을 진행하기 전에 법무·Compliance 부서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3) 다른 정책 또는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다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은 본 정책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CJ 진출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제정한 경제제재에 관한 국가별 또는 산업별 세부 가이드라인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다른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본 정책과 상충된다면, 보다 엄격한 내용을 우선하여 따라야 합니다.

II. 글로벌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 정책

1. 기본 원칙(Our Standard)

(1) 경제제재 준수

CJ 구성원은 CJ에 적용되는 경제제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거래 전 정책 준수 여부 점검 및 이행, 의심 시 거래중단

CJ 구성원은 모든 거래에 앞서 본 정책이 제시하는 각종 점검 및 이행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나 염려가 된다면, 거래를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미 진행한 경우에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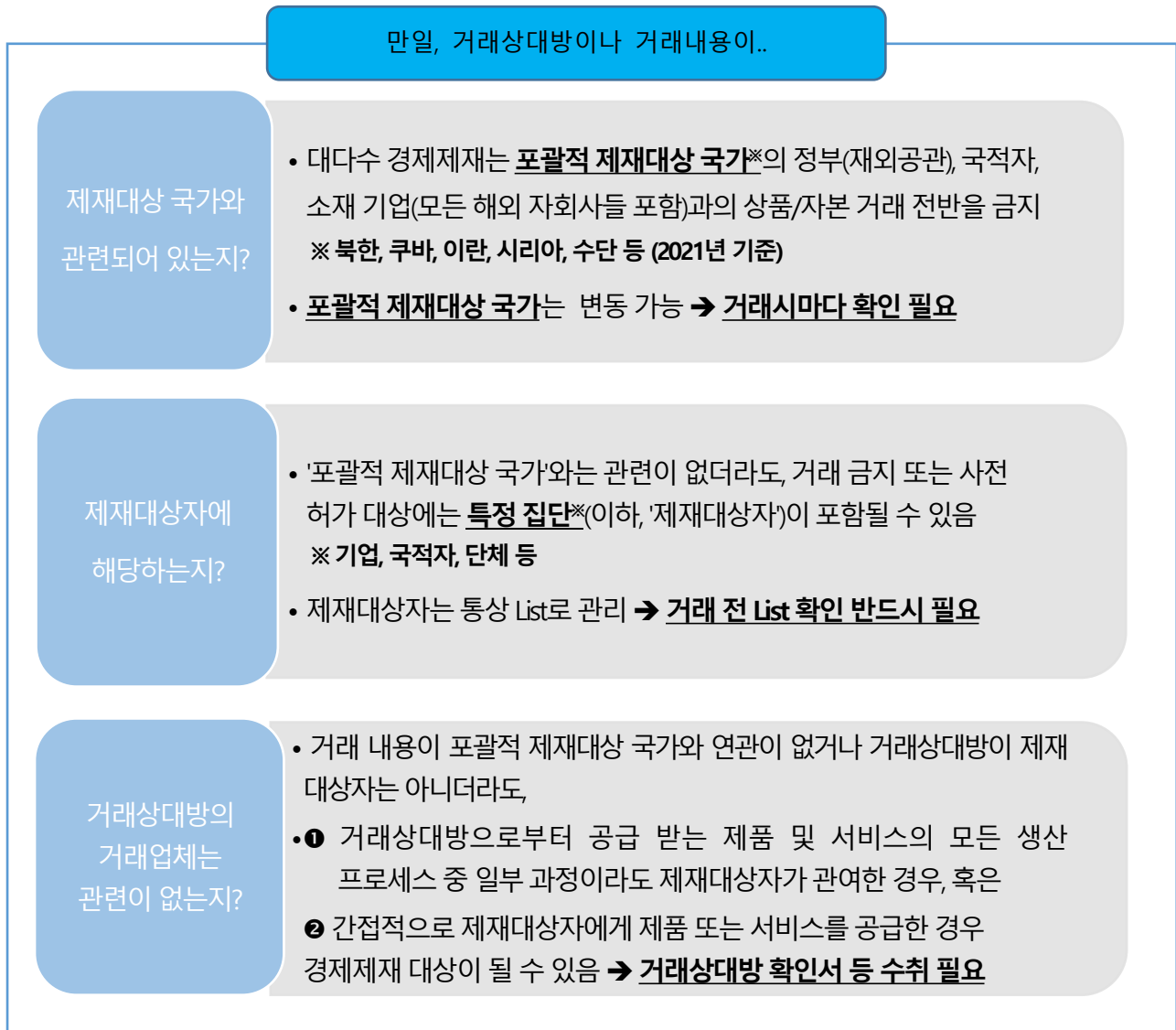
(3) 전문가의 조력

만일 본 정책의 모든 사항을 점검 및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스럽거나 또는 확신이 없다면, 반드시 법무·Compliance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물품, 물질(중요 자원), 정보, 기술 등의 수출이나 해외 이전 등의 거래는 본 정책에서 다루는 경제제재 외에도 각종 수출 통제 규정(trade restrictions)이 적용될 수 있는바, 필요한 경우 법무·Compliance 부서에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2. 사전 스크리닝 (Sanctions Screening)

사전 스크리닝이란 거래를 시작하기 전 거래 내용과 거래 상대에 대하여 실사(Due Diligence)를 통하여 경제제재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 ◎ "거래상대방"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 또는 구매를 위해 CJ와 사업 관계가 있거나 혹은 사업 관계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일체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예: 고객, 공급업체, 벤처 파트너, 에이전트, 계약업체, 판매업체, 컨설턴트, 영업 담당자, 유통업체, 컨설턴트, 외부 법률대리인, 합작회사 파트너, 파견업체 등]

(1)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지?

UN이나 주요 국가에서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를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포괄적 제재 대상국가로는 이란, 시리아, 쿠바, 북한, 수단 등이 있습니다(2021년 기준).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는 각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정책과 외교 전략, 관계 회복, 국제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수시로 바뀌고, 그에 따라 경제제재의 수준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은 모든 거래 시마다 반드시 실시 해야 합니다.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는 아래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financial-sanctions/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

이 사이트에 대한 이해나 확인이 어렵거나, 제대로 사전 스크리닝이 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 반드시 법무·Compliance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재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위의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 외에도 UN 등 국제기구나 국가들은 특정 대상과의 거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를 제재대상자라고 합니다. 제재대상자는 개인, 법인, 기타 단체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우리가 거래하려 하는 거래상대방이 제재대상자인지는 아래의 리스트와 링크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전 스크리닝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 정책은 주요국가의 경제제재가 그 대상입니다. 그러나, 주요국가 이외의 국가들도 독자적으로 경제제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J가 진출한 국가의 독자적인 제재에 의한 제재대상자인지 여부도 반드시 사전 체크하여야 합니다.

☞ 제재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목록

- UN제재통합검색리스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
<https://scsanctions.un.org/search/>
- 미국제재통합검색엔진(Consolidated Screening List Search Engine)
<https://legacy.export.gov/csl-search>
- EU제재통합금융제재명단 (EU Consolidated Financial List)
<https://webgate.ec.europa.eu/europeaid/fsd/fsf>

참고. 미국제재통합검색엔진 활용 방법

① Key-word 등 입력

Search the Consolidated Screening List

Search all [the screening lists](#) at one time by filling in the search boxes below.
If you get too many results, try including more information to the additional fields. If you get too few results, try searching one field at a time.

Keyword
Search for words in the name, alternative names (aliases), title of the entity, and additional remarks regarding the entity.

Name
Search for an entity's name or one of its alternative names.

② 검색 결과 주요 내용

Source	←	제재근거 (SDN, DPL, Entity List 등)
Start Date		
Federal Register Notice		
Name		
License Requirement	←	제약 조건 (허가 필요, 예외 사유, 조건 등)
License Policy		
Source List URL		
Source Information URL		
Alternative Names		
Addresses		

(3) 거래상대방의 거래업체가 경제제재 대상에 해당 하는지?

거래 내용과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 스크리닝 결과,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거래가 경제제재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CJ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은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와 연관이 없거나 제재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라면, 경제제재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 ❶ 우리가 하려는 거래의 앞과 뒤, 즉 원자재 공급부터 제품이 생산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 판매되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중 단 하나라도 위 (1), (2)의 제재대상이 관여하였거나
- ❷ 제재대상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에 해당하고
- ❸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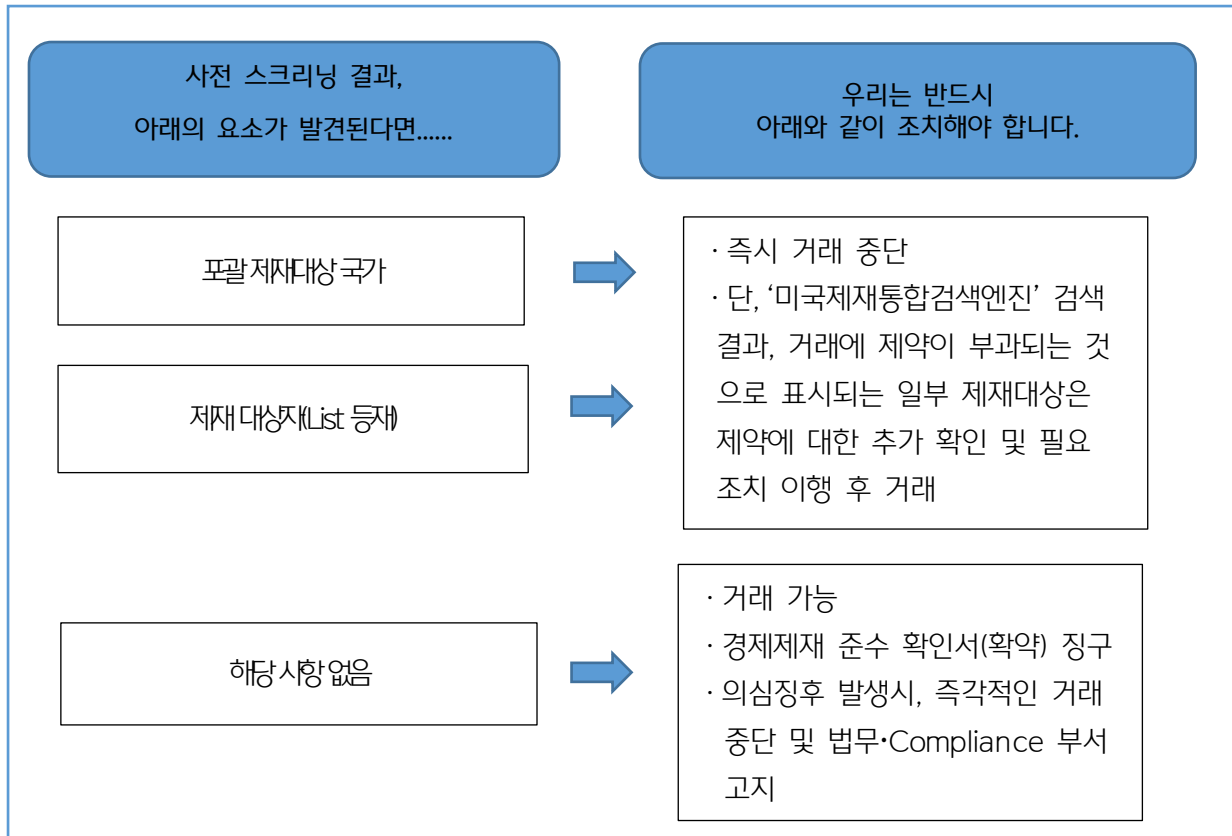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생산 공급되는 모든 과정에서, 즉 우리가 포함된 전체 거래 구조 속에 경제제재 대상인 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실사를 통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거래와 무관한 모든 거래의 참여자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여러 사정 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제재 위험의 최소화를 위해 적어도 우리의 직전 거래 당사자나 다음 거래의 당사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예방적 조치로서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제재와 관계 없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합니다.

3. 우리의 행동 (Responding to Screening Results)

우리는 사전 스크리닝을 통해 파악한 경제제재 위반 리스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합니다.



(1) 금지거래 : 즉시 거래 중단

검색, 실사 등 사전 스크리닝 결과, CJ의 거래상대방 혹은 CJ의 공급망에 관여하는 업체가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와 관련되거나 제재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일단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제재대상 국가나 제재대상자임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는 물론이고, 불분명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한편,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에 해당되더라도 경제제재 중에는 인도적인 차원의 거래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인허가 등 특별한 조건이 부과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다음에야 다시 거래를 추진 또는 재개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거래상대방의 거래처가 제재대상자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제재대상자로 의심된다면, 우리는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상대방에게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소명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Compliance 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금지거래

-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로 확인된 국가※와 그 재외공관, 위 국가들이 소유한 해외 기업 및 위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 (각 해외 자회사를 포함함)
 - ※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크림분쟁지역
- UN 제재대상 국가 또는 제재대상자
- EU 통합 금융 제재대상
- 미국제재통합검색엔진 검색 결과, Source(제재근거)에 SDN(Specifically Designated Nationals List)으로 분류한 제재대상과 SDN으로 분류된 제재대상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기업)
- 미국제재통합검색엔진 검색 결과, Source(제재근거)에 DPL(Denied Persons List)로 분류한 대상
- 그 외 관련 법에서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대상 등

(2) 고위험거래 : 즉시 거래 중단 및 제약조건 확인/점검

사전 스크리닝 시, “미국제재통합검색엔진” 검색 결과,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제약이 부과된다고 List에 표시되는 대상자(Entity List 등)가 있습니다.

제약의 내용으로는 거래 전 인허가 취득, 특정 물품 수출입 불가 등이 있는데, 제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하게 되면, 이는 경제제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특정 거래가 이러한 제약이 따르는 거래로 확인된다면, 일단 거래 진행을 중지하고 그 내용과 거래의 적법성 등 정확한 제약 조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법무·Compliance 부서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주요 고위험거래

- 특정 원자재 혹은 부품의 수출입이 금지 혹은 제한된 국가, 기업, 조직, 개인과의 거래
- 미국제재통합검색엔진 검색 결과, SDN이나 DPL 등 금지 거래 대상으로 표시된 것은 아니나 조건이 부과된 대상(Entity List 등)과의 거래
- 제재 명단에 등재되지는 않았으나, 대량살상무기 밀매, 인권유린, 테러조직지원, 마약생산, 다국적 범죄조직 지원 등 반인륜적 사건에 연루되어 정부와 마찰이 있는 국가, 기업, 조직, 개인과의 거래
- 금지 거래 대상자(포괄적 제재대상국가, SDN, DPL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3)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조치 사항

위 스크리닝 결과 해당 거래가 제재위반의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경제제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적 요소가 있는 거래에는 다음의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거나 다음 내용이 포함된 별도의 서약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하여야 합니다.

- ❶ 경제제재 위반 사실이 없으며, 당해 거래 물품 또는 서비스의 전 과정에서도 포괄적 제재대상 국가나 제재대상자와 관련 사실이 없다는 확인
- ❷ 거래 전 과정에서 경제제재를 준수하였으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확약
- ❸ 경제제재 위반 시 CJ와 CJ의 임직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확약

4. 우회시도 금지 (No Bypass)

본 정책은 경제제재의 적용을 회피 또는 우회하려는 모든 직/간접적인 시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경제제재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한 모든 직/간접적인 시도란, CJ 구성원이 경제제재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다음과 같은 일체의 행위입니다.

- ❶ 제3자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
- ❷ 허위로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적으로 정보를 누락하여 사전 스크리닝 절차를 무의미하게 하는 행위
- ❸ 스크리닝 결과 위험 정황이 나타났음에도 그 기록을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등

우리가 우회시도를 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가 우회시도를 한 경우 비록 CJ는 그럴 의사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CJ도 제재에 따른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현지 거래상대방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더욱 더 컴플라이언스 실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관련 약속서나 진술보장을 반드시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5. 신고 및 보복 금지 (Reporting and Anti-Retaliation)

본 정책 또는 경제제재 법규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염려가 있는 모든 사항은 반드시 CJ Alert Line*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의 담당 업무인지를 떠나 CJ구성원 모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 "CJ Alert Line"은 본 정책 위반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기 위해 CJ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이메일, 팩스, 전화, 서신, CJ Whistle 등 모든 신고 채널을 의미

CJ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어떠한 형태의 보복이나 차별, 협박도 금지합니다.

CJ가 보호하는 대상에는 본 정책 위반 사실이나 혐의사실을 신고한 사람, 신고할 의사를 표시한 사람, 신고에 협조한 사람, 조사에 참여하거나 조사를 보조한 사람을 모두 포함합니다.

CJ는 본 정책 위반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사실을 선의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위반 사실이 없었음이 확인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6. 본 정책 위반의 결과 (Consequences of Violation)

글로벌 경제제재 컴플라이언스는 지속적인 교육, 모니터링 및 정기적인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CJ는 경제제재 관련 이슈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제안할 것입니다.

본 정책의 위반은 행동강령 및 고용계약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징계 사유로 해고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의 본 정책 위반은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 등 사업 관계 종료, 향후 사업적 기회 박탈 등 막대한 사업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도 반드시 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정책의 위반과 더불어 경제제재의 위반은 당해 법인과 모든 CJ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거래/무역 중지, 자산 및 계좌 동결, 국제거래 블랙리스트 등재, 교정프로그램 가동 강제, 평판 훼손, 고객/투자자 이탈 등의 유무형적 손해가 그것입니다.

경제제재 위반은 CJ구성원 개인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제재는 개인에 대하여도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단지 회사나 CJ를 위해서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끝으로, 거래상대방의 경제제재 위반은 행정 처분, 형사 처벌 등의 직접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와의 사업적 관계에서도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CJ는 “국제 무역 규제 준수”를 사업적 이익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